

## 2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

### 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업무

구분	사업영역	세부사업
기본 사업	광역단위 사업기획 및 운영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 정신건강 연구조사 및 확산</li> <li>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</li> <li>정신질환·정신건강 인식개선 등 홍보·캠페인</li> </ul>
	기초·중독센터 지원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직원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센터교육 과정 지원</li> <li>지역 맞춤 프로그램 기획·개발 및 확산</li> <li>센터 평가업무 및 컨설팅 지원</li> </ul>
	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기개입팀 운영</li> <li>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구성·운영 지원</li> <li>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(1577-0199)운영</li> </ul>
	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광역단위 재난심리지원 업무</li> </ul>
특화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독관리 지원사업</li> </ul>	

※ 지역 인구 규모 및 예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되 기본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, 지역 특성에 따라 특화사업 추진

### 1) 광역단위 사업기획 및 운영업무

#### 가) 지역 정신건강 연구조사 및 확산

##### (1) 사업목적

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현황 파악,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서비스와 자살예방사업을 개발, 수행하기 위한 근거 마련

## (2) 사업운영

### ● 사업내용

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지역현황 조사·분석 및 정신건강서비스 요구도 조사

**예시**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현황, 아동·청소년 정신건강 관리현황, 중독문제, 재난 정신건강 등

### ● 활용가능자료

정신건강실태조사, 지역사회 정신건강조사, 자살실태조사, 사망원인통계, 국가정신건강 현황보고서 등

### ● 조사·분석 결과 활용방안

- 사업계획서 및 매체 개발, 성과 모니터링
- 기초·중독센터 업무지원 시 활용
- 지역사회 공유 및 언론홍보 등

## 나)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

### (1) 주요역할 및 목적

- 광역단위 정신건강서비스 협력체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
- 응급대응, 사업기획, 사업 확산 등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의 활성화·전문화 기여

### (2) 사업내용

- 지역사회 새로운 유관기관(자원) 발굴 및 현황파악
-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문제 관련 유관기관(자원)과의 협력체계 구축
- 사업특성에 따른 연계망 구축 및 자원 활용(응급대응, 인식개선 홍보 등)
- 네트워크 구축·유지를 위한 사업기획 및 수행 등

## 다) 정신질환·정신건강 인식개선 등 홍보·캠페인

### (1) 사업목적

지역사회 대상 홍보, 캠페인을 통해 정신건강, 중독문제 관련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 도모

### (2) 사업내용

- 광역단위(광역 내외) 및 관할 지자체와 연계한 온·오프라인 홍보·캠페인 수행
  - (역할) 홍보·캠페인 기획, 연계수행, 광고 및 홍보매체 제작, 연계확산 등

## 2) 기초·중독센터 지원업무

※ 중독센터 지원업무와 관련하여,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없는 시·도의 경우에만 해당

### 가) 직원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센터 교육과정 지원

#### (1) 사업목적

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인력의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

#### (2) 사업내용

- 기초·중독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  - 종사자(직급 및 경력, 면허사항 등 고려) 대상 교육 수요조사
  - 정신건강 국가정책동향 및 지역현안, 주민수요 등 분석
  - 교육 커리큘럼 수립 및 교육매체 개발
  - 교육과정 운영 및 만족도(현업적용 가능성, 난이도의 적합성 등) 관리
  - (주요내용) 정신건강 국가정책동향 및 지역현안, 주민수요 등 분석, 정신질환자관리,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관리,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실적관리, 재난심리지원 등 필수사업 및 현안사업, 신규 종사자를 위한 교육(업무 안내, 1577-0199 전화상담 실무, 사업계획서 및 실적서 작성법 등), 타 기초·중독센터 우수사례, 지역연계를 통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활성화 방안 등
- 광역단위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
- 기초·중독센터 내부 자체교육과정 지원
  - 종사자(직급 및 경력, 면허사항 등 고려) 대상 교육 수요조사, 공통사항 도출
  - 교육 커리큘럼 수립 및 교육매체 개발·지원
  - 교육과정 운영 및 만족도(현업적용 가능성, 난이도의 적합성 등) 관리

### 나) 지역 맞춤 프로그램 기획·개발 및 확산

#### (1) 사업목적

지역사회 현황, 지역주민 수요 등을 고려한 정신건강, 중독사업 기획·개발 및 확산을 통한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도모 및 사업 효율화 실천

## (2) 사업내용

- 지역 현안, 주민수요, 이해관계자 의견, 국내·외 우수사례 등 조사·분석
- 프로그램 기획·사업계획 내 반영
- 센터 내·외부 실행체계 구축, 활용매체 개발 등 실행
- 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
- 우수 프로그램의 경우 광역 내·외부 및 지자체(기초·중독센터)로의 확산·발전

## (3) 활용가능자료

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매뉴얼,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사례집, 정신건강 검진도구 및 사용에 대한 표준지침 등

## 다) 센터 평가업무 및 컨설팅 지원

### (1) 사업목적

기초, 중독센터의 정신건강사업 수행 수준을 파악하고, 최소 또는 적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향 모색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

### (2) 사업내용

- 기초·중독센터 평가 및 컨설팅 지원 담당자 또는 전담팀 지정
- 기초·중독센터 평가지표 및 운영체계 등 세부내용 파악
- 기초·중독센터 종사자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평가업무 안내
- 기초·중독센터 정량지표 항목 평가 수행
- 평가자료 취합, 자체평가서 작성법, 평가지표 의의 등 안내
- 평가위원 구성·운영 지원, 수당지급 등 행정사항 수행
- 센터별 평가·컨설팅 일정 조정 등 평가과정 운영
- 센터별 평가결과, 개선사항 등 취합·정리,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제출
- 평가결과보고서를 통한 컨설팅(환류) 수행, 향후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 고도화 지원

### 3)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

#### 가) 위기개입팀 운영

##### (1) 사업목적

광역 및 거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설치·운영을 통해 자·타해 위험 등 정신과 적 응급상황에서 경찰, 구급대원들과 협조적이고 안전한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

##### (2) 설치 및 운영기관

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필수 설치, 지역상황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추가 설치 권장

##### (3) 관할지역

- 인구밀집지역 또는 응급출동 요청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관할하며, 시도 전 지역으로 범위확대 필요
  - 광역센터와 거점 기초센터에 분할 설치된 경우, 담당 지역 구분 필요

##### (4) 역할

- 관할지역 내 정신응급상황\* 발생 시 구급대원, 경찰 등과 함께 대응
  - \*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자·타해 위험이 발생한 경우
  - 자·타해 위험대상자의 정신질환 관련 여부, 정신적인 위기평가 수행을 통한 구급대원 및 경찰의 현장대응 지원
  - 자·타해 위험대상자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,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이송 요청 및 협조 지원
  - 응급상황 후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사례관리 연계 실시
  - \*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대상자의 경우 동의자에 한해 단기 사례관리서비스 제공

##### (5) 사업대상

-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의한 정신질환자\* 중 자·타해 위험이 있는 자
  - \* 조현병, 급성정신병, 주요우울증,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자, 자살시도자, 알코올사용장애, 약물 남용 등의 물질 관련 장애
  - ※ 단순 주취자, 심한 만취상태로 상담 및 평가가 불가한 경우, 자살시도 등으로 정신과적 평가보다 신체적 처치가 우선인 경우 등은 대상이 아님
- 경찰·소방의 현장 대응시 정신과적 평가 필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협조를 요청한 자

## (6) 사업내용

※ 현장대응은 2인 이상 배치하여 종사자 안전보장 필요

### ● 위기개입 전·후 상황에 따른 주요업무

#### - 위기개입 요청 시 대응

- 정신과적 응급상황 평가

※ 정신과적 위기분류 평정척도(CRI) 활용, 「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위험평가 안내 2.0」 참고

- 현장대응, 전화상담, 내소상담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
- 응급입원 정신의료기관 자원파악 및 정보제공, 응급입원 대응지원
- 자·타해 위험성이 높고,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경찰·소방 등 정신응급 대응기관과 협력하여 개입

#### - 응급입원 등 정신의료기관 내 대응

-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·지인에게 정신질환 상황안내 및 퇴원 후 서비스 안내

#### - 응급입원 등 의료기관 퇴원 후 개입

-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맞춤 서비스\* 제공 및 의뢰

\* 개별상담, 사례관리, 재활프로그램, 치료연계, 자조모임, 치료비 등 지원

- 대상자 수요에 따른 지역사회 보건·복지 자원파악 및 정보제공 등

### ● 상시 주요업무

- 보건소, 의료기관, 경찰서 및 소방서 등과의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참여를 통한 업무협력 체계 구축·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수행 등 지원

\*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·운영은 시도에서 주관하며, 광역센터에서 지원함

-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에 관한 사례연구 및 교육참여 등 종사자 역량강화

(7) 위기대응 업무 추진체계

추진 주체	역할
보건복지부	<p>■ 사업 총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기개입팀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</li> <li>• 국고보조금 교부 등</li> </ul>
국립정신건강센터	<p>■ 위기개입팀 운영 및 정책 지원</p>
광역자치단체 (시·도)	<p>■ 위기개입팀 운영 지원·지도·감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운영·관리에 대한 지원</li> <li>• 관할 경찰서, 소방본부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제공</li> <li>• 위기개입팀 근무자에 대한 채용·배치·복무관리 지원 등</li> <li>• 지방보조금 교부, 사업홍보, 언론대응 등 행정지원</li> </ul>
위기개입팀 설치 기초자치단체 (시·군·구)	<p>■ 위기개입팀 운영 지원·지도·감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운영에 대한 지원</li> <li>• 위기개입팀 근무자에 대한 채용·배치·복무관리 지원</li> <li>• 관할 경찰서,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</li> <li>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의한 입원 행정지원</li> </ul>
정신건강복지센터 (광역 및 위기개입팀 설치된 기초센터)	<p>■ 위기개입팀 운영 및 정신 응급상황 대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기개입 대상자 안전 확인 및 모니터링, 현장출동 등 응급상황 관리</li> <li>• 24시간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제공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필요 시 112 및 119 출동 및 위치추적 요청</li> <li>- 필요 시 현장 출동 또는 유선 지원을 통한 위기개입</li> </ul> </li> <li>• 중·장기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등록·연계</li> <li>• 사업계획 수립·운영·보고</li> <li>• 위기개입팀 근무자에 대한 채용·복무관리·교육 등</li> <li>• 1577-0199 정신건강 상담 전화 운영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야간 및 공휴일 정신건강 상담 운영 및 권역형 위기개입팀 연계지원</li> </ul> </li> </ul>
경찰	<p>■ 현장 출동·안전 및 보호 조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살시도자 및 정신과적 응급대상자 신변확보 및 보호조치</li> <li>• 위치추적 및 보호자 정보수집 후 제공</li> <li>•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응급입원</li> <li>•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</li> </ul>
소방	<p>■ 위기대상자 구조·구급 활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살시도자 및 정신과적 위기대상자 구조·구급 활동 수행</li> <li>• 위치추적 지원</li> <li>• 대상자 이송</li> <li>•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</li> </ul>

(8) 위기개입팀 운영사항

● (운영시간) 주중 야간, 주말·공휴일 주야간

※ 주중 주간에 발생하는 위기개입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담당

● (운영유형) 다음의 유형 중 시·도 여건에 맞게 운영

※ 출동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 추가 설치 및 경찰합동대응팀 운영 고려 필요

- 위기개입팀
- 경찰합동대응팀(정신건강전문요원-경찰 합동 근무)

● (운영형식)

- 24시간 365일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위기개입팀은 교대제로 근무조를 편성·운영하며 인력 등을 감안하여 근로유형 및 근무순환방식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

- 3인 1조 구성 원칙. 상황에 맞게 팀 및 조별 구성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
- 동일근무 시간 내 및 출동은 2명 이상 배치하여 안전보장 필요  
(단, 경찰 및 소방 개입 상황에 따라 1명 출동 가능)
- ※ 예: 평일 야간당직, 공휴일 2교대 / 2인 출동, 1인 대기

● (기타사항)

- 근무편성에 따른 근무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운용  
 ※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
- 연장근무, 야간근무, 휴일근무에 근로자 협의에 따라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으며 보상휴가 기준 등에 관하여는 기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
- 시·도 여건에 맞춰 근로형태 설정 가능(탄력적근무시간제\* 등)  
 \* [별지 제II-2-1호]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서(예시)  
 ※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가이드북 참고(고용노동부)
- 위기개입팀 건강권 보호: 「야간작업」 특수건강진단 시행(연 1회)  
 ※ 특수 건강검진 시기 및 항목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준용

## 나)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구성·운영 지원

### (1) 목적

-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문제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, 시도 및 지자체별 정신건강, 경찰, 소방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·운영
- 정신 위기상황 시 신고, 현장대응, 이송, 사후관리 및 예방 등 각 단계별 안전보장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성·운영

### (2) 협의체 구성(※ 아래 각 기관별 담당자 필수참여)

- (시·도) 협의체 운영총괄, 정신건강 담당 부서장(위원장, 당연직)
- (정신건강전문기관)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, 정신의료기관 담당, 응급진료협력병원 관계자
- (경찰) 지방경찰청 담당 부서장 또는 정신질환자 관리 담당
- (소방) 지방소방청 담당 부서장 또는 정신질환자 관리 담당
- (그 외) 정신응급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

### (3) 협의체 주요안건

- 지역사회 정신 위기대응 현황 및 추진체계 점검,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
- 정신질환자 응급진료를 위한 지정 협력병원 현황점검
- 지역 내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현황점검
- ‘정신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안내’ 지역 내 적용
- 지역 내 정신 위기대응 관련 현안 발생 시 대응방안 논의·적용

### (4) 협의체 운영방안

- 위원장은 협의체 운영을 총괄하고, 협의체를 대표함
  -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, 현안 발생 시 수시\* 개최 가능
- \* 수시 협의회는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함

### (5) 행정사항

- 시·도지사는 정신건강 협의체 구성 및 정신건강문제 위기대응 현황, 정신의료기관 대상 응급진료를 위한 협력병원 지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 지체없이 제출 필요

## 다)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(1577-0199) 운영

- ※ p.89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업무-3)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-다)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(1577-0199) 운영 내용 참조

#### 4)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업무; 광역단위 재난심리지원업무

##### 가) 사업목적

재난 발생 시 신속한 심리지원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회복을 지원

##### 나) 사업내용

- 중규모 재난 발생 시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서 심리지원 시점 등 결정이 이루어진 후 재난 심리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
-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(1577-0199) 운영
- 재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
-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(2인 이상) 지정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 통보
- 재난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 운영

## 5)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

### 가) 사업목적

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확대 및 정신건강증진 도모

### 나) 사업대상

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된 위기가구, 취약지구 아파트 단지 내 취약계층, 상담창구 방문자, 거동이 불편한 노인·장애인 시설 등

### 다) 사업내용

-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심리지원 인프라·역량 강화, 세부 운영관리 및 연계체계 구축, 사업성과관리 등 지원
-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(지역)을 대상으로 마음안심버스를 운영

☑

**< 마음안심버스 >**

**(1) 사업목적**  
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(지역)을 대상으로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, 재난 심리지원 실시

**(2) 사업내용**

- (홍보 및 캠페인) 정신건강, 중독, 자살 문제 등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 및 캠페인 수행
- (정신건강 검진 및 스트레스 측정)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, 선별검사
- 정신건강 상담 및 사례관리
  -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연계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상담
  - 취약지역 중심 운영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연계
  -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위기대응 및 현장 상담소 운영

**(4) 운영기관**

- 총 45대(광역 9대, 기초 36대) 배치

※ 세부사항은 마음안심버스 운영 안내 참조

## 6)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

### 가) 사업목적

청년층 중증정신질환을 조기발견·개입하여 빠른 회복 및 만성화 방지 지원

### 나) 사업대상

- 19세 ~ 34세 청년
  - 초발정신질환 청년(정신질환 발병 5년 이내)
  -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조기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년
  - 그 외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청년
    -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(F20-F29), 조병 에피소드(F30), 양극성정동장애(F31) 등 조현병 범주장애
    - 우울장애(F32~34), 불안장애(F41) 등 정신증을 동반한 기분장애, 불안장애
    - 그 외 F코드로 진단을 받은 자(치매, 지적장애 제외)

### 다) 사업내용

- 지역사회 내 보건·복지자원\* 연계를 통한 정신증 고위험군 발굴, 인식개선 등
    - \* 대학교, 병무청, 청년센터, 고용센터, 주민센터 등을 통해 사업홍보 및 대상자 연계·발굴
  - 조기개입
    - 맞춤형 사례관리, 만성화 예방 및 회복촉진 프로그램\* 등
      - \* 인지행동치료, 증상관리교육, 가족중재, 신체건강프로그램, 사회기술훈련, 또래 자조모임 운영·지원 등
- ※ 정신증 초발, 고위험군 청년은 청년마음건강센터가 인접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으로 우선 의뢰

#### 〈 청년마음건강센터 〉

- 전국 17개 시·도 운영(독립형 2개소, 부설형 15개소)
    - 독립형: 충남아산시, 전남순천시
    - 부설형: (광역) 서울, 대구, 인천, 대전, 울산, 세종, 충북, 전북, 경남, 제주 (기초) 부산진구, 광주북구, 경기남양주시, 강원춘천시, 경북포항북구
- ※ 세부사항은 청년마음건강센터 매뉴얼 참조

## 7) 중독관리 지원사업

- 지역사회 중독건강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확산
- 중독사업 운영 매뉴얼 및 콘텐츠 기획·개발 및 확산
- 중독예방 인식개선 등 홍보, 교육, 캠페인
-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
-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
- 중독 정신건강 인적자원 개발 등

※ 세부내용은 다.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 참조

## 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업무

구분	사업영역	세부사업
기본 사업	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증정신질환자 조기발견</li> <li>•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</li> <li>• 중증정신질환자 재활지원</li> <li>•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</li> <li>•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업무지원</li> </ul>
	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신건강 위기개입업무</li> <li>•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구성·지원</li> <li>•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(1577-0199) 운영</li> </ul>
특화 사업	• 아동·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	
	•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	
	• 찾아가는 심리지원	
	• 기초단위 재난심리지원업무	
	•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·홍보·협력체계 구축	
	• 중독관리 지원업무	

※ 지역 인구 규모 및 예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되 기본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, 지역특성에 따라 특화사업 추진

### 1) 사업대상

#### 가) 이용대상

- 지역사회 내 거주하는 주민

#### 나) 등록기준

-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자로, 센터 등록에 동의한 자
  - 정신질환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 뇌전증, 치매, 지적장애, 발달장애는 제외
    - ※ 대상자에게 보다 적절한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해 연계, 의뢰할 수 있음.

#### 다) 퇴록기준

- 사망(질병, 각종사고, 자살, 기타), 전출·연계(전출일반, 기관연계), 서비스 종결(협의종결, 부재종결, 기관종결, 본인희망), 자살위험감소, 오등록, 기타
  - ※ 세부 내용은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매뉴얼 참고

## 2)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

### 가) 조기발견

#### (1) 사업목적

- 초발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등 조기개입을 통해 치료의 효과성을 높여, 정신질환의 중증화 및 만성화 예방
- 관리·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대상 서비스 수요에 맞춘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

#### (2) 사업내용

- 지역사회 자원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초발정신질환자 조기발견
  -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에 대한 온·오프라인 홍보
  - 주기적 협의체 운영을 통한 기관별 역할구분 및 사례공유 등 상시 협력체계 마련
  - 행정복지센터, 지역사회기관 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상자 의뢰 시 사전에 대상자 동의를 받아서 연계
- 등록 전 대상자의 포괄적 사정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면·비대면 접촉하여 증상, 치료 여부 등 파악하고 등록유도
  - ※ 자·타해 위험성 평가 등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방향을 결정하고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의뢰대상자(기관)에 현황을 공유, 타 지역자원 연계·의뢰 및 관리지원, 재의뢰 절차를 안내
  - 의뢰받은 대상자가 서비스 이용거부시 의뢰기관과 센터 간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개입 및 서비스 제공 방법, 개입중단 등에 대한 결정 필요
- 정신건강 전문서비스 추진
  - 임상적 고위험군에 대한 일차적 평가체계 구비
  - 임상적 고위험군의 평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자문체계 운영
  -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
  - 초발중증정신질환자에 특화된 사례관리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운영

#### (3) 주요 협력기관의 예

- 학교(교육청, Wee센터), 복지기관(복지관, 자활센터, 지역아동센터, 청소년센터), 병무청, 고용센터, 청년센터, 주민센터(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), 보건소(방문건강관리팀) 등

## 나) 사례관리

### (1) 사업목적

- 중증·만성질환자의 정신과적 증상관리 및 악화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 안착과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

### (2) 서비스 내용

-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의 요구에 따른 개별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
  - 서비스 요구도 평가에 기반하며, 초기평가 이후 6개월 간격 1회 이상 수립
  - 입·퇴원, 증상 및 기능의 변화시점에 수립 필요
  - 증상 및 기능 평가적 요소, 서비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제시 필요
-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기적인 사례회의 실시
  - 사례회의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참여 권장
  - 사례관리 등록, 퇴록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매뉴얼 구비 필요
    - ※ 사례관리 매뉴얼은 자체개발 또는 광역단위에서 개발하여 공통 적용 가능
-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역 보건·복지자원연계를 통한 요구도 반영 필요
  - 정신건강서비스 외 소득, 의료비, 주거, 자활, 건강관리, 돌봄, 직업재활 등의 사회보장 욕구가 있는 경우 지역 기관(희망복지지원단, 찾아가는 복지전담팀, 자활센터, 드림스타트, 의료급여 사례관리, 노인돌봄 기본서비스, 방문건강관리 등)과 연계·지원
    - ※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(MHIS) 행복e음 연계 메뉴 활용해 보건·복지서비스 의뢰 신청·수신
    - ※ 지역유관기관과의 연합사례회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
  - 센터 이용대상자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·군·구에 신고하여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

## 다) 재활지원

- 사례관리 기반으로 제공되는 재활서비스로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주간재활 프로그램 (사회적응훈련, 약물증상관리, 직업재활, 기타재활 등) 운영
  - 지역자원이 없는 경우,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요구(need)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권고
  - 지역자원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부분적 혹은 전체적인 재활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운영 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 포괄성 향상

☑

**<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>**

(1) 사업목적

- 정신질환자의 자립도모와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지원
- 지자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 지역협력서비스 구축
- 중증정신질환자의 회복지원서비스 모형 확산

(2) 사업대상

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에 동의한 자로 만 19세 이상 중증 정신질환자 중 자·타해 우려가 적고,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 및 자립(주거·취업) 욕구가 있는 자

(3) 사업내용

- 장기입원(소) 및 고립된 정신질환자 발굴·지원
- 일상생활지원: 위생관리, 금전관리, 대중교통, 전자기기 사용, 지역사회초기적응지원 등
- 건강지원: 약물관리, 운동프로그램, 대사증후군 관리, 식단관리 등
- 취업지원: 직업상담, 면접준비, 직업훈련, 취업장 방문, 취업장 개발 등 고용활동 지원
- 주거지원: 주거자원 연계를 통한 독립생활 지원, 가사업무 코칭, 주거 위생·안전·환경 개선, 체험주택, 지원주택 등 제공
- 동료지원가 지원: 동료지원가 양성, 회복경험 공유, 가정방문동행, 프로그램 지원 등
- 회원자치활동: 회복지원공간 공동체생활로 부서활동 (일 중심 일과) 추진

※ 지역 여건 및 이용자 요구에 따라 지역특화프로그램 구성

(4) 운영기관

-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(광주광역시, 용인, 화성, 구리, 춘천, 전주, 정읍, 구미, 제주)
- (정신건강협의체) 지자체 및 보건소
- (회복지원사업 전담팀) 정신건강복지센터

※ 세부사항은 2024년 회복지원사업 안내 참조

## 라)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

### (1) 사업목적

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

### (2) 지원종류 및 대상

- (행정·응급입원) 자·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보호 조치 및 치료 지원을 통한 최적기 치료 지원
- (발병 초기) 조현병 등으로 처음 진단 받은 대상자가 치료를 거부·중단하지 않도록 발병 초기\* 5년간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여 지속 치료 유도
  - \*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로, 조현병,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(F20-F29), 조병 에피소드(F30), 양극성 정동장애(F31), 재발성우울장애(F33), 지속성 기분장애(F34)에 해당되는 자
- (외래치료 지원) 퇴원 후 치료중단, 재입원 방지를 위해 지자체로부터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
- (권역정신응급) 권역정신응급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

### (3) 지원내용

- 정신의료기관의 치료비 지원 대상자 여부 조회에 회신
- 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
  - ※ 세부내용은 IV.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공통추진사업-3.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참고

## 마)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업무지원

### (1) 주요업무

- 입원 연장 청구대상자에 대한 면접 평가 지원
-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
-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집중적인 사례관리
  - \* 상기업무는 시·도, 시·군·구의 업무수행체계 구성에 따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서 수행할 수 있음

### (2) 실적보고

- 시·도는 별도 서식에 의하여 해당 분기 시·군·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실적[별지 제Ⅳ-5-1호]을 취합하여 매 분기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센터는 이를 지원함

### 3)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

#### 가) 정신건강 위기개입업무

##### (1) 사업목적

자·타해 위험 등 지역사회 내 정신과적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, 소방대원들과 협조적이고 안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

##### (2) 사업대상

-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의한 정신질환자\* 중 자·타해 위험이 있는 자
  - \* 조현병, 급성정신병, 주요우울증,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자, 자살시도자, 알코올사용장애, 약물 남용 등의 물질 관련 장애
  - ※ 단순 주취자, 심한 만취상태로 상담 및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, 자살시도 등으로 정신과적 평가보다 신체적 처지가 우선인 경우 등은 대상이 아님
- 경찰·소방의 현장 대응시 정신과적 평가 필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협조를 요청한 자

##### (3) 주요업무

- ※ 현장대응은 2인 이상 배치하여 종사자 안전보장 필요
- 위기개입 요청 시 대응
  - 정신과적 응급상황 평가
    - ※ 정신과적 위기분류 평정척도(CRI) 활용, 「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위험평가 안내 2.0」 참고
  - 현장대응, 전화상담, 내소상담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
  - 응급입원 정신의료기관 자원파악 및 정보제공, 응급입원 대응지원
  - 자·타해 위험성이 높고,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경찰·소방 등 정신응급 대응기관과 협력하여 개입
- 응급입원 등 정신의료기관 내 대응
  -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·지인에게 정신질환 상황안내 및 퇴원 후 서비스 안내
- 응급입원 등 의료기관 퇴원 후 개입
  -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맞춤형 서비스\* 제공을 위한 담당자 배정·등록조치
    - \* 개별상담, 사례관리, 재활프로그램, 치료연계, 자조모임, 치료비 등 지원
  - 대상자 수요에 따른 지역사회 보건·복지 자원파악 및 정보제공 등

## 나) 정신건강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구성·지원

### (1) 사업목적

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문제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, 지자체 관할 정신건강, 경찰, 소방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·지원

- 정신 위기상황 시 신고, 현장대응, 이송, 사후관리 및 예방 등 각 단계별 안전보장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성·지원

### (2) 협의체 구성 (※ 아래 각 기관별 담당자 필수참여)

- (보건소) 협의체 운영총괄, 보건소장(위원장, 당연직)
- (정신건강전문기관)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장, 정신의료기관 담당, 응급진료협력병원 관계자
- (경찰) 지방경찰청 담당 부서장 또는 정신질환자 관리 담당
- (소방) 지방소방청 담당 부서장 또는 정신질환자 관리 담당
- (그 외) 정신응급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

### (3) 협의체 주요안건

- 지역사회 정신 위기대응 현황 및 추진체계 점검,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
- ‘정신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안내’ 지역 내 적용
- 지역 내 정신 위기대응 관련 현안 발생 시 대응방안 논의·적용

### (4) 협의체 운영방안

- 위원장은 협의체 운영을 총괄하고, 협의체를 대표함
-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, 현안 발생 시 수시\* 개최 가능

\* 수시 협의회는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함

### (5) 행정사항

- 시·군구는 정신건강 협의체 구성 및 정신건강문제 위기대응 현황, 정신의료기관 대상 응급진료를 위한 협력병원 지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지체없이 제출 필요

## 다)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(1577-0199) 운영

### (1) 운영목적

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국민의 정신과적 위기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정보 제공

※ 법적근거: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제8항, 제15조제9항,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

### (2) 운영주체

- 주간(9:00~18:00): 이용자 거주지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
- 야간(18:00~익일9:00) 및 휴일: 위기개입팀

### (3) 주요업무

- 자살 위기 및 우울, 불안 등 정신건강상담
- 정신건강 정보 및 정신의료기관 등 안내
- 필요시 경찰·소방 등 개입요청 및 정신응급 대응

### (4) 운영방식

- 24시간 전국 어디든지, 누구나 정신과적 위기상황 시 공통 번호(1577-0199)로 전화 가능
- 정신건강위기상담 발신 시 휴대전화 이용자 기준 기지국을 경유해 가장 가까운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는 라우팅 서비스 제공

### (5) 운영원칙

- 운영인력: 정신건강전문요원 우선적으로 배치
  - ※ 불가피하게 전문요원이 아닌 자를 배치할 경우 자체 또는 외부의 전문교육 이수 필요
- 정보공유: 자·타해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 경찰서, 소방서 등에 개입요청
- 기록관리: 수신, 발신(재상담 포함) 모든 상담 건은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에 작성
- 대상자의 폭언 등 대처를 위해 녹음 전화 등 운영할 수 있음
  - 녹음에 대해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, 녹음 중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
  - 저장된 녹음파일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·처리

### (6) 행정사항

- 1577-0199 착신번호 신규등록 및 번호변경: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에 문의

#### 4) 아동·청소년 정신건강사업

##### 가) 사업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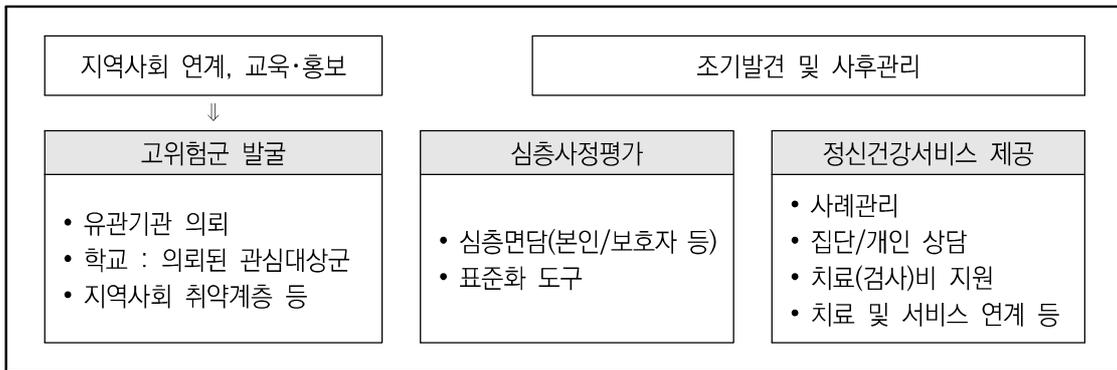
지역사회 내 아동·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, 조기발견 및 상담·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발달 지원

##### 나) 사업대상

-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·청소년(미취학 아동 포함) 고위험군
- ※ 본인 및 보호자 동의 필수

##### 다) 사업내용

〈 아동·청소년 사업 추진 체계도 〉



##### (1) 사례관리

- (발굴) 지역사회 유관기관 의뢰,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체 모집 등에 의해 대상자 발굴
- (심층사정평가) 정신건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표준화된 사정도구를 이용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사정
  - 심층사정평가는 필요한 경우 대상자 가정이나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할 수 있음
  - 아동청소년 담당자가 진행하되, 담당자가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등 활용
- (서비스 제공) 심층사정평가를 통해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, 정신건강 문제의 종류,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제공서비스 결정
  -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, 학교 간 연계를 통해 개별상담, 집단프로그램 운영
  - 사례관리자는 시설(학교)을 방문하거나, 센터로 내소시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. 전화상담, 가정·지역사회 방문 등도 실시(서비스 이용 여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)
- (평가) 제공 전과 등록이후 6개월 마다 SDQ-Kr[별지 제 II-2-2호] 점수 변화를 측정

## (2) 치료연계 및 치료비지원

- (지원대상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하며, 예산 범위 내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긴급복지 지원중인 아동·청소년까지 지원 가능
  - \* 단,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업으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세부 대상 및 규모, 기본방침 등 결정
- (지원금액) 1인당 연 40만원 이내
  - \*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또는 센터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
- (지원 내용)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,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치료비용(약제비 포함),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 참여 비용
  -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치료 및 약물 복용의 순응정도, 증상의 호전, 기타 어려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함.
  - 지자체의 다른 사회복지사업 또는 청소년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
- (증빙자료) 진료비 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, 소득증빙자료, 그 외 센터에서 필요한 서류 등
  -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원 비용이 정신의료기관 진료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고, 대상자로부터 진료비 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함
  - 진료비 영수증 접수 시 진료비 지원 즉시 처리 필요
  - \* 단,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 가능

## (3) 교육 및 홍보

-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상 교육 및 정보제공으로 고위험군\*\*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할 수 있는 체계 안내
  - \* 교육청, 학교(학생정서·행동특성검사), 청소년 상담센터, 청소년수련관, 아동복지시설, 사법기관(소년원 등), 직업시설 등
  - \*\* 정신건강고위험군의 범위: 척도검사상 고위험으로 선별된 자
- 아동·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교육 등 실시,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아동·청소년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,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및 선별검사 관리안내 교육 등
  - \*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관찰, 특이사항, 대면 기술, 아동청소년 우울 및 자살 예방 교육 등



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-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〉

(1) 사업대상 (다음 기준 모두 충족 필요)

-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60%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인 자
-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로 센터 담당자가 본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

(2) 제공비용/지원기간: 월 18만원 / 12개월(재판정 1회)

〈 서비스 비용 부담비율 〉

구분	1등급(수급자,차상위)	2등급(중위소득 120% 이하)	3등급(중위소득 120%초과~160%이하)
정부지원금	162,000원	144,000원	126,000원
본인부담금	18,000원	36,000원	54,000원

(2) 연계방법

- 「아동·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대상자 추천서」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의로 발급하고, 서비스 신청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안내
  -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부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 아동·청소년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, 선정 결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와 신청자에게 통보
- ※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 (<http://www.socialservice.or.kr>)에서 지역 내 제공기관 확인 가능

## 5)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

### 가) 사업목적

청년층 중증정신질환을 조기발견·개입하여 빠른 회복 및 만성화 방지 지원

### 나) 사업대상

- 19세 ~ 34세 청년
  - 초발정신질환 청년(정신질환 발병 5년 이내)
  -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조기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년
  - 그 외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청년
    -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(F20-F29), 조병 에피소드(F30), 양극성정동장애(F31) 등 조현병 범주장애
    - 우울장애(F32~34), 불안장애(F41) 등 정신증을 동반한 기분장애, 불안장애
    - 그 외 F코드로 진단을 받은 자(치매, 지적장애 제외)

### 다) 사업내용

- 지역사회 내 보건·복지자원\* 연계를 통한 정신증 고위험군 발굴, 인식개선 등
  - \* 대학교, 병무청, 청년센터, 고용센터, 주민센터 등을 통해 사업홍보 및 대상자 연계·발굴
- 조기개입
  - 맞춤형 사례관리, 만성화 예방 및 회복촉진 프로그램\* 등
    - \* 인지행동치료, 증상관리교육, 가족중재, 신체건강프로그램, 사회기술훈련, 또래 자조모임 운영·지원 등
    - ※ 정신증 초발, 고위험군 청년은 청년마음건강센터가 인접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으로 우선 의뢰



#### < 청년마음건강센터 >

- 전국 17개 시·도 운영(독립형 2개소, 부설형 15개소)
  - 독립형: 충남아산시, 전남순천시
  - 부설형: (광역) 서울, 대구, 인천, 대전, 울산, 세종, 충북, 전북, 경남, 제주  
(기초) 부산진구, 광주북구, 경기남양주시, 강원춘천시, 경북포항북구

※ 세부사항은 청년마음건강센터 매뉴얼 참조

## 6)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

### 가) 사업목적

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(지역)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확대 및 정신건강증진 도모

### 나) 사업대상

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된 위기가구, 취약지구 아파트 단지 내 취약계층, 상담창구 방문자, 거동이 불편한 노인·장애인 시설 등

### 다) 사업내용

- (방문상담) 지역 복지체계에서 발견된 정신건강 위기가구가 이동취약계층일 경우, 복지담당자가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 시 방문상담 제공
  - (출장상담소)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요 마을 단위로 상설 또는 비상설 상담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
  - (상담창구 개설) 기초자치단체가 읍·면·동 주민센터,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 상담창구를 개설,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이 출장 상담 제공
  - (마음안심버스)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(지역)을 대상으로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하여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수행
- ※ 위에서 제시한 4개 사업내용 중 지자체 상황·여건 등을 고려하여 1개 이상 사업추진 필요

✓ **〈 마음안심버스 〉**

**(1) 사업목적**  
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(지역)을 대상으로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, 재난 심리지원 실시

**(2) 사업내용**

- (홍보 및 캠페인) 정신건강, 중독, 자살 문제 등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 및 캠페인 수행
- (정신건강 검진 및 스트레스 측정)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, 선별검사
- (정신건강 상담 및 사례관리)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연계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상담, 고위험군 사례관리 연계

-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위기대응 및 현장 상담소 운영

※ 세부사항은 마음안심버스 운영안내 참조

## 7)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업무; 기초단위 재난심리지원 업무

### 가) 사업목적

재난 발생 시 신속한 심리지원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회복을 지원

### 나) 사업내용

- 소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 총괄
- 재난 발생 시 재난 심리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
- 재난 경험자 사례관리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, 지역사회 자원 연계
- 재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
-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(2인 이상) 지정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 통보

## 8)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·홍보·협력체계 구축

### 가) 사업목적

지역사회 대상 정신건강 교육, 홍보 등을 통해 정신건강·중독문제 관련 편견해소 및 인식 개선 도모,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문제 지원 강화

### 나) 사업내용

- **(교육)**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, 선별검사 관리안내 교육 등 시행
- **(홍보)**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·오프라인 홍보·캠페인 수행
- **(협력체계 구축)**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문제 관련 유관기관(자원)과의 협력체계 구축  
- 협의체에 정기적으로 운영·참여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

**예시** 지역사회 정신건강 협의체, 위기대응협의체, 인권개선협의체 등

※ 중앙·광역단위에서 마련한 교육·홍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며, 자체 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·캠페인 운영에 과도한 인력·예산 지출 지양하고 최소한 필요한 수준으로 운영

## 9) 중독관리 지원사업

### 가) 관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시

- 중독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로서 중독대상자 조기발견 및 의뢰

### 나) 관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없는 경우

-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중독사업 대상자 의뢰연계, 관리체계 활성화
  - 적절한 평가도구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경험을 통한 사정평가
  - 치료연계 및 모니터링
  -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
  -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 운영
- ※ 세부내용은 라.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 참조

**다**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

구분	사업영역	세부사업
기본 사업	광역단위 중독사업 기획 및 운영 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사회 중독 정신건강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확산</li> <li>중독사업 운영 매뉴얼 및 콘텐츠 기획·개발 및 확산</li> <li>중독예방 인식개선 등 홍보·교육·캠페인</li> <li>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</li> </ul>
	기초중독센터 지원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</li> <li>중독 정신건강 인적자원 개발</li> </ul>
특화 사업	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지원</li> </ul>

※ 지역 인구 규모 및 예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되 기본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, 지역특성에 따라 특화사업 추진

**1) 광역중독관리사업 기획 및 운영업무**

가) 지역사회 중독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확산

(1) 사업목적

지역사회 중독 정신건강 문제 현황 및 치료·재활 인프라, 서비스 이용현황 등의 조사·분석을 통해 광역중독관리사업을 개발 및 수행하기 위한 근거마련

(2) 사업내용

- 지역사회 중독질환 유병률 및 위험요인 현황 분석
  - 지역사회 중독문제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
  - 지역 내 중독질환의 치료·관리 인프라\* 및 서비스 이용현황 등 조사·분석 등
- \* 관할지역 내 중독질환 치료 의료기관 및 치료·재활 지원 시설·기관(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, 스마트쉼센터,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,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상담센터 등)

(3) 참고자료

- 정신건강실태조사, 지역사회 정신건강조사,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 등
- 마약류 범죄백서, 스마트폰과의존 실태조사, 게임과몰입종합실태조사, 사행산업 이용 실태 조사 등 각종 중독 관련 조사 및 통계 등

## 나) 중독사업 운영 매뉴얼 및 콘텐츠 기획·개발 및 확산

### (1) 사업목적

지역사회 중독문제, 중독 정신건강 서비스 현황, 지역주민의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중독사업 기획·개발·확산을 통한 지역주민의 중독 정신건강 증진 도모 및 사업 효율화 실천

### (2) 사업내용

- 지역사회 중독 정신건강 관련 현안, 지역주민의 중독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(needs),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자문, 국내외 우수사례 등 조사분석
- 지역 맞춤형 중독 정신건강 프로그램 기획 및 사업계획 내 반영, 시범사업 실시
- 지역 맞춤형 중독 정신건강 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
- 지역 내외로의 확산·발전을 위한 중독사업 운영 매뉴얼 개발

## 다) 중독예방 인식개선 등 홍보·교육·캠페인

### (1) 사업목적

지역사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주민 인식 및 이용률 제고

### (2) 사업내용

- 지역사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유관 시설, 제공서비스 등 광역중독관리체계 홍보
- 지역사회 중독문제의 현황 및 치료·관리의 필요성 교육 및 홍보

### (3) 사업운영

- 광역단위(광역 내외) 및 관할 지자체와 연계한 온·오프라인 홍보·캠페인 수행
  - (역할) 홍보·캠페인 기획, 광고 및 홍보물 제작, 연계확산 등
  - (홍보 매체) 홈페이지 운영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등 SNS용 카드뉴스, 어플리케이션 활용, 포스터, 리플렛, 교육 책자, 언론 기고 등

## 라)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

### (1) 사업목적

지역사회 내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포함한 중독 정신건강 유관기관 등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

## (2) 사업내용

- 지역사회 내 중독 정신건강 유관 기관의 분포, 인프라 현황 관련 조사·분석 및 지역주민 대상 안내
  - 시군구 지역별 중독유형별(알코올, 마약류, 도박, 인터넷게임) 서비스 지원체계 안내
- 지역 내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중독 정신건강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·운영
  - 지역사회 중독 관련 문제(응급·일반)시 상호협력 및 연계를 위한 공동 대응 매뉴얼 개발 및 확산

## 2) 기초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업무

### 가)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

#### (1) 사업목적

-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관련 서비스의 질, 전문성 제고
- 지역사회 중독관리체계에서 제공되는 중독관리 서비스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유형별 효과성 평가·관리를 통한 효과적 중독관리 서비스 제공

#### (2) 사업내용

- 시·도 내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컨설팅 지원
-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실무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
-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홍보·교육 지원
- 지역 내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기타 중독 치료·재활 지원시설·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지역 중독관리서비스 유형 및 내용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
- 국내외 지역사회 중독관리서비스 유형별 효과성 평가 및 관리

### 나) 중독 정신건강 인적자원 개발

#### (1) 사업목적

지역사회 중독 정신건강 서비스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

#### (2) 사업내용

-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실무자 대상 중독 관련 전문교육 운영
  - 실무자(직급, 경력, 면허사항 등 고려) 대상 교육 수요조사
  - 교육 커리큘럼 수립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
    - 예시) 신규 종사자 교육 및 보수교육, 기타 중독관련 센터 간 교환 교육 운영 및 지원 등
- 교육과정 운영 및 만족도(현업적용 가능성, 난이도의 적합성 등) 관리

### 3)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사업

#### 가)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 지원

##### (1) 사업목적

중독 회복자 중심의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 모델 구축, 이를 통해 당사자 중심 회복지원 기반마련 및 동료지원가 활동참여자의 자활자립 제공

##### (2) 사업내용

- 시·도 내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록자 대상 중독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 홍보
-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운영 및 관련 지원
- 지역 내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활동 지원
- 지역 내 활동 중인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슈퍼비전 및 역량강화교육 시행
-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활동 관련 우수사례 공유 및 외부 확산

**라**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

구분	사업영역	세부사업
기본 사업	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등록 전 대상자 상담</li> <li>• 단기개입상담(SBIRT)</li> </ul>
	중독질환자 관리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독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</li> <li>• 중독질환자 재활프로그램</li> <li>• 가족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례관리서비스</li> <li>- 교육 및 프로그램</li> </ul> </li> </ul>
특화 사업	지역사회 중독정신건강증진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역사회 중독 정신건강 실태조사</li> <li>• 지역사회 중독 관련 교육, 홍보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청년중독관리사업 (해당 사업예산을 받는 경우 필수)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노숙인 등 취약계층 관리사업 (해당 사업예산을 받는 경우 필수)</li> <li>•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지원</li> </ul>

※ 지역 인구 규모 및 예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되 기본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, 지역특성에 따라 특화사업 추진

**1) 사업대상**

가) 이용대상

- 지역사회 내 거주하는 주민

나) 등록기준

- 지역사회 내 중독문제가 있어 고위험군 이상으로 선별된 대상자 및 가족
  - 정신질환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 뇌전증, 치매, 지적장애, 발달장애는 제외
  - ※ 대상자에게 보다 적절한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해 연계, 의뢰할 수 있음.

다) 퇴록기준

- 사망(질병, 각종사고, 자살, 기타), 전출·연계(전출일반, 기관연계), 서비스 종결(협의종결, 부재종결, 기관종결, 본인희망), 자살위험감소, 오등록, 기타
- ※ 세부 내용은 2024년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매뉴얼, 2023년 개정판 중독정신건강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참고

## 2)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사업

### 가) 등록 전 대상자 상담

#### (1) 사업목적

개인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(경찰, 행정복지센터 등)으로부터 의뢰접수 된 대상자에게 조기선별 및 중독상담 서비스 제공

#### (2) 사업내용

- 내소상담, 전화상담, 인터넷상담, 가정방문 및 지역 방문서비스 등을 통해 사정평가
- 초단기개입을 통해 단기개입 및 집중단기개입으로 연계되도록 동기 강화

### 나) 단기개입상담(SBIRT : Screening Brief Intervention Referral Treatment)

#### (1) 사업목적

중독자 조기발견 및 단기치료(SBIRT : Screening Brief Intervention Referral Treatment) 적용 단기개입 서비스를 통한 중독 고위험군 조기 중재 및 의뢰체계 구축

#### (2) 사업내용

- 중독 고위험군 조기선별 및 단기개입
    - 타 기관에서 조기선별 및 현장단기개입(On site) 1회기 후 의뢰한 경우, 의뢰서를 통해 최초 상담 입력 후 바로 집중단기개입 시행
    - 중독센터에서 조기선별부터 바로 개입하는 경우, 조기선별도구(AUDIT-K 등)를 활용한 선별 및 초단기개입 실시
    - 중독 고위험군으로 선별시, 1회기 단기개입, 3회기 이상 집중단기개입, 치료 의뢰 서비스 수행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의뢰체계 구축
- ※ 단기개입서비스는 반드시 대면상담으로 수행

### 〈 조기발견 및 단기치료-SBIRT 흐름도 〉



### 3) 중독질환자 관리사업

#### 가) 중독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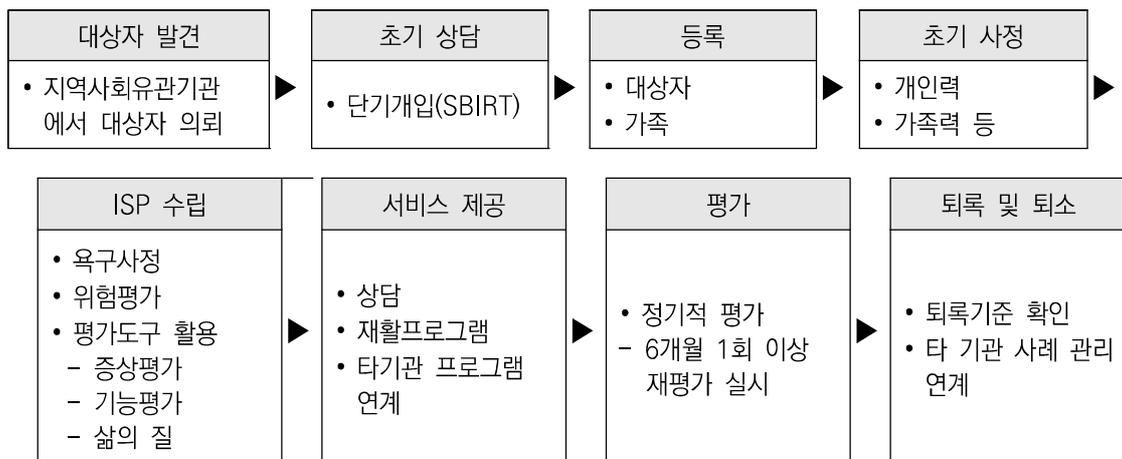
##### (1) 사업목적

중독질환자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,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하고,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중독질환의 효과적 관리

##### (2) 사업내용

- 중독자 고위험군 등 등록 및 맞춤형 ISP 수립
  - 지역사회 유관기관(경찰,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등)에서 의뢰된 대상자 등 신규 발견된 중독질환자와 가족에 대해 사례관리 대상자 등록 면담, ISP 수립 등의 사례등록 수행
    - 초기사정: 대상자의 욕구 및 개인력, 병력, 치료력, 가족력 등을 사정(문제 개선 욕구, 자원 및 강점 등을 사정)
    - ISP 수립: 대상자 욕구에 따른 개별화된 계획 수립
  - ※ 중독질환자 사례관리 관련 세부사항은 「중독 정신건강 표준사례관리 매뉴얼」 국립정신건강센터. (2021) 참조
- 등록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
  - 개별 및 가족상담(가정방문 및 내소상담), 자원관리 및 조정, 퇴원계획수립, 지역사회 자원조정, 재활 프로그램, 직업재활, 대상자 욕구에 따른 타기관 서비스 연계, 반기별 ISP 수립 수행
  -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외부 슈퍼비전 체계 운영

#### 〈 지역사회 내 중독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과정 〉



## 나) 중독질환자 재활프로그램

### (1) 사업목적

중독질환자의 재활 교육 및 훈련 지원, 사회적 관계 형성 지지를 통한 재발방지 및 사회적 관계 지지 형성

### (2) 사업내용

- 중독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재활교육 프로그램 운영
  - 중독 정신건강 교육, 인지행동, 재발예방, 12단계 촉진, 동기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
- 사회적 관계 지지를 위한 자조모임 운영 등 네트워크 형성
  - 정기적으로 재활 프로그램 네트워크, 운영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포괄성 향상

## 다) 가족지원 사업

### (1) 사업목적

중독질환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가족의 심리·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독질환자·가족의 변화 및 회복 도모

### (2) 사업내용

- 중독질환자 가족 신규발굴 및 상담서비스
  - 중독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등록관리 서비스 운영
  -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
- 가족모임 지원 프로그램
  - 중독질환자 가족모임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족 자조모임 운영 및 지원 시행
-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
  - 신규 발견된 고위험군, 등록대상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실행
  - 집단상담, 명상, 야외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, 가족을 위한 중독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

#### 4) 지역사회 중독정신건강증진사업

※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부재 지역의 경우, 아래의 광역형 사업 중 선택하여 특화 사업으로 실시가능하며, 사업 세부사항은 「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」 참조

##### 가) 지역사회 중독 정신건강 실태조사

- 지역사회 중독질환 유병률 및 위험요인 현황 분석
  - 지역사회 중독문제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
  - 지역 내 중독질환의 치료·관리 인프라\* 및 서비스 이용현황 등 조사·분석 등
- \* 지역 내 중독질환 치료 의료기관 및 치료·재활 지원 시설·기관(기초형 중독관리 센터, 스마트쉼센터, 도박문제관리센터,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상담센터 등)

##### 나) 지역사회 중독 관련 교육·홍보

- 지역사회 중독관리체계 홍보 및 중독문제 현황·치료·관리 필요성 관련하여 캠페인, 홍보물 제작 배포, 홈페이지, 온라인 홍보, 연계확산 등 시행
- 생애주기별(아동·청소년, 직장인, 노인, 지역주민 등) 대상의 중독문제 예방 교육 시행

#### 5) 청년중독관리사업

##### 가) 사업목적

청년층 대상 알코올·마약류 등 중독 정신건강문제 예방·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(상담·치료관리·자조모임 등 운영)

##### 나) 사업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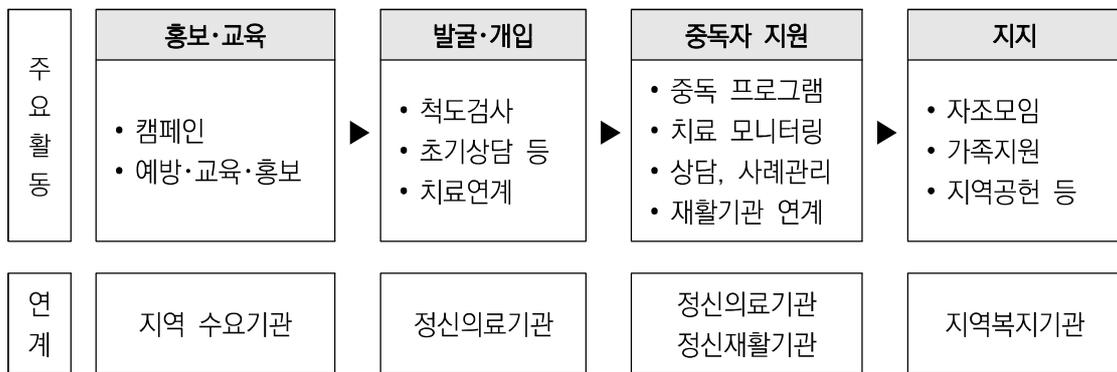
지역 내 청년(만15~39세)

##### 다) 사업내용

- 홍보·교육
  - 유관 지역자원 연계, 청년층 대상 중독예방 홍보·교육 실시 및 지원
  - 청년층 집중지역·시설(대학, 직장, 청년센터, 지역 고용센터, 병무청 등) 등 유관 지역자원과 협력해 예방 등 홍보·교육
- 발굴·개입
  - 연계 또는 직접 발굴 통해 검사·초기상담 및 등록·치료 연계
  - 보건소(정신건강복지센터), 정신의료기관, 병무청, 청년센터, 지역고용센터, 대학교(학생상담센터, 영서포터즈 등)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, 수요자 발굴·지원 및 검사, 초기상담 등 연계체계 구축

- 지원
  - 중독자 사례관리, 주·야(·비대면) 프로그램 운영, 치료연계 및 동기강화를 통한 중증·만성화 방지 및 사회복귀 도모
- 지지
  - 자조모임, 중독자 가족지원, 지역공헌활동(인식개선) 등 운영·지원

〈 사업체계 〉



6) 노숙인 등 취약계층 관리사업

가) 사업개요

노숙인 및 취약계층 대상 알코올 중독문제 예방·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

나) 사업내용

-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
  -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 서비스 지원 또는 연계할 기관 및 자원 현황 파악
    - ※ 지원대상기관: 노숙인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, 법무부 보호관찰소, 경찰서, 소방서, 종합사회복지관, 가족폭력상담소, 여성의 전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기관
  - 연계기관과 MOU 체결 등 공식적 협력체계 망을 구축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마련
  - 연계기관과의 정기적 업무회의, 통합사례관리회의 등을 통한 기관 및 종사자 간의 상시협력
- 유관기관 역량강화 지원
  - 유관기관의 종사자들이 중독문제 선별 및 기본적 예방교육 등을 사업 대상자에게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
  - 유관기관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제공할 중독 관련 예방교육 개발 및 운영 지원
  - 정기 워크숍 등을 통하여 전체적인 연계, 협력 업무에 대한 이해도 증진

- **유관기관 내 중독자 발견 및 사례관리, 교육 서비스**
  - 유관기관 내 사업대상자에 표준화된 도구(AUDIT 등)를 활용한 중독문제 선별과 피드백 및 단기개입 서비스의 직접 제공 또는 지원(진단적 평가 및 ISP 수립 등)
  - 사례관리 서비스는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 - 사례관리 과정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이 관리·감독하며, 지원대상 기관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
  - 치료 내용 및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
- **집단상담·교육 프로그램 운영**
  - 대상자의 증상, 동기수준에 맞추어 상담·교육 프로그램 구성
  - 집단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공동 개발

〈 사업체계 〉

구분	유관기관 연계망 구축	유관기관 역량강화지원	유관기관 중독자 발견/사례관리, 교육서비스	집단상담·교육 프로그램 운영
주요 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역사회 자원 현황 파악</li> <li>• MOU 체결</li> <li>• 통합사례회의</li> <li>• 간담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</li> <li>• 중독관련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제공 및 운영지원</li> <li>• 연계기관 워크숍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독문제 선별 및 단기개입서비스</li> <li>• 유관기관 등록 대상자 사례관리</li> <li>• 복지 서비스 연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동기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</li> <li>• 프로그램 지원</li> <li>• 교육콘텐츠 지원 및 공동개발</li> </ul>
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노숙인관련시설</li> <li>• 보호관찰소</li> <li>• 경찰 및 소방</li> <li>• 행정복지센터</li> <li>•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기관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MOU체결유관 기관</li> <li>• 수요조사기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MOU체결유관 기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MOU체결 유관기관</li> </ul>

7)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 지원

- 중독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 홍보
-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운영 및 관련 지원
- 지역내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활동 지원
- 지역내 활동중인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슈퍼비전 및 역량강화교육 시행
-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활동 관련 우수사례 공유 및 외부 확산

## 마 성과관리 및 평가

### 1)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적관리

#### 가) 운영목적

- 지역 및 기관간 정보연계를 강화하여 퇴원·퇴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재활을 지원하고 보건·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
- 통합시스템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간 연계의뢰 활성화하고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근거 기반의 정책수립

#### 나) 시스템 주요기능

- (정신건강 접수상담) 접수상담 대상자에게 대면·비대면 상담 내용 관리기능 제공
- (정신건강 사례관리)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부터 욕구사정 평가, 개별서비스 계획(ISP) 수립·제공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사례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지원  
- 타 기관과의 연계 및 서비스의뢰 등 지속적인 대상자에 대한 개입에 대한 관리기능 제공
- (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업무지원) 정신건강증진 영역의 예방 및 증진사업(교육, 홍보, 행사, 캠페인, 세미나)에 대한 관리기능 제공  
- 지역사회사업을 통한 네트워크 활동 및 지역사회 기반 조사연구 수행에 대한 관리기능 제공
- (통계 및 실적관리) 근거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실적, 통계자료 등을 제공

#### 다) 시스템 탭별 주요관리 정보 현황

- (접수상담) 등록 전 대상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및 정보제공
- (등록회원 사례관리) 등록회원에게 대한 사정평가, 평가도구, 개별서비스계획(ISP), 개별상담, 자원조정, 그룹프로그램 운영 등 사례관리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 관리
- (정신건강증진) 정신건강복지사업과 관련한 교육, 행사, 조사·연구  
- 정신건강 예방 및 증진사업(교육, 행사, 캠페인, 세미나)에 대한 기록관리  
- 지역사회사업을 통한 네트워크 활동은 ‘자원관리’ 탭에 기록 관리  
- 지역사회기반으로 조사나 연구사업 수행시 ‘조사/연구’ 탭에 기록 관리
- (대상자 의뢰·연계)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원활한 의뢰연계 지원  
- 정신건강복지센터, 지자체(읍면동) 등 보건복지 관련 기관 간 대상자 개입 및 서비스 제공  
- 정신의료기관 등 퇴원·퇴소자에 대한 퇴원통보 정보 수신 및 처리  
- 범정부 기관(병무청 등)에서 정신건강상담이 필요한 대상자 의뢰

- (유틸리티) 시스템 사용에 있어 유용성 있게 사용하도록 회의록, 근무일지, 출장내역, 일정 관리 등 유틸리티 기능 지원
  - (통계 및 지표) 등록된 회원명부, 등·퇴록 회원현황, 의뢰·연계 내역, 평가도구 및 ISP실적 등 전반적인 실적 통계관리
- ※ 개인정보 동의서는 [별지 제 II-2-3호] 참고

## 라) 업무실적표

※ 업무실적표 및 작성요령은 [별지 제 II-2-4호~11호] 참고

- 조회일자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, 자살예방사업 업무실적 등 사업별 업무실적표 10종 실시간 확인 가능
- 업무실적표(마감) 조회처리 방법
  - 기준 연월을 기입하고 추출하고자 하는 업무실적표 양식과 기관유형을 선택
  - 인쇄하여 출력하거나 필요시 다운로드 사유 입력 후 엑셀다운 받아 활용
- 업무실적표(마감)는 익월 15일 이후에 데이터가 생성되고 마감 이후 데이터 보정 불가(시도, 보건복지부 업무실적 제출 시 활용)

## 2) 2025년('24년 실적) 지자체 합동평가

### 가) 지자체 합동평가 개요

-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내 등록된 정신질환자 신규등록률과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를 파악하여 정신건강현황 파악
  - \* '24년 기관 내 정신질환자 신규등록률
  - \* '24년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
- (평가목적)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의 전문인력·인프라 확충 유도 및 정신질환자 조기발견·개입 환경 구축
- (평가대상)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, 기초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, 기초자살예방센터(독립형)

### 나) 2025년('24년 실적) 방문건강관리,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추진방향

-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및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
- 등록된 정신질환자수 증가율 추이를 파악하여 일반 국민대상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필요
- 정신건강사례관리수준 평가를 통해 적정 사례관리자수 확보와 지역정신건강 관리서비스 내실화